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

안수정·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부연구위원)

1. TPP 추진 배경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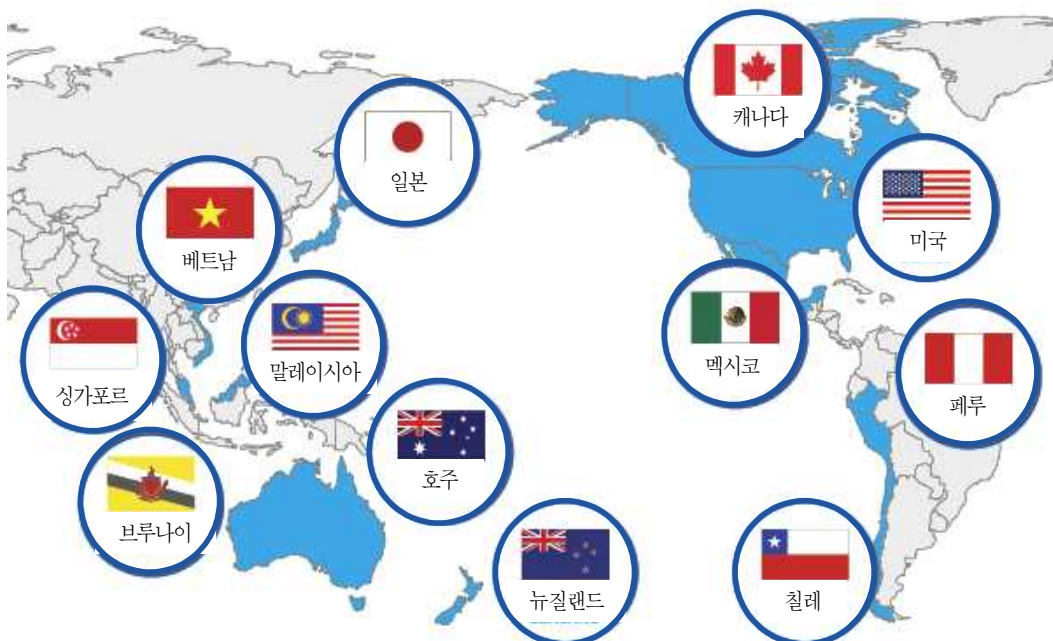
2015년 10월 5일,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타결되었다. TPP는 오랫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와는 달리, 다양한 지역과 경제규모의 국가들이 모여 단일경제권 형성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TPP 회원국들의 교역량은 세계 총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지 않은 TPP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 효과는 역내국의 무역시장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TPP 타결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처음 TPP 협상이 출범하였을 때 미국은 협상 회원국이 아니었다. TPP협상의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2005년 6월에 개시한 “Pacific 4(P4)” 협정이 발전되면서 TPP가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P4 협정은 발효 1년차부터 회원국 간에 90%의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P4 협정은 2006년 5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 (crystalism14@krei.re.kr), (shlee@krei.re.kr). 본고는 이상현 외(2015)의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연구를 상당부분 발췌 및 요약하고, 일본의 TPP 대응방안과 최근 정보는 업데이트한 것임.

칠레, 브루나이 4개국만의 무역협정으로 발효되었다.

발효 3년 차쯤 접어들었을 때, P4 국가만의 무역협정은 미국의 참여로 흐름이 바뀌게 된다. 당시 미국과 함께 호주와 페루가 P4 국가와 FTA를 맺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TPP로 명칭이 바뀌고, 2010년 3월에는 베트남까지 합류하면서, P4 국가와 새롭게 협상에 참가한 4개국의 TPP 협상이 시작된다.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협상에서 말레이시아가, 2012년 10월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TPP 협상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일본이 TPP 협정의 마지막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지금의 TPP 회원국의 구성을 갖추게 된다. 1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TPP는 2015년 10월 5일자로 타결되었다.

그림 1 TPP 협정 회원국



자료: (<http://www.inboundlogistics.com/cms/article/global-logistics-december-2015/>).

미국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어왔던 TPP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TPP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미국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일본을 영입하며 세계 경제에서 TPP의 영향력을 강화시켰고, TPP는 성공적으로 타결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미국의 견제대상인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위해 ASEAN+6(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TPP 협정문 구성 및 주요내용

TPP 협정문은 협상 타결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5년 11월 5일에 공개되었다. 협정문의 본문은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전문, 부속서, 관련기구와 함께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결과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표 1 참조>. TPP 협정문은 아직까지 각 국가에서 TPP 협정문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완성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TPP는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미 FTA와 비교해보았을 때, 시장접근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관세 자유화가 이루어졌지만, 규범 측면에서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와 경쟁력 및 비즈니스원활화,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규범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TPP 협정의 기본 목표는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과 투명성 강화이며, 협정문의 규범 분야에는 WTO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포함되었다. WTO를 통해 불공정한 교역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되었던 의제들이 TPP에 반영되면서 향후에 TPP의 규범 내용이 글로벌 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TPP의 규범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TPP 참여 희망국들은 협상에 앞서 국내 관련 규범들을 TPP 수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PP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립 조항 및 일반 정의, 시장접근 분야와 각종 규범, 예외조항, 최종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조항 및 일반 정의(제 1장)에서는 TPP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와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고, 시장접근 분야(제 2장)에서는 역내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및 인하 방식과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규범 분야 중 원산지 규정(제 3장)은 TPP 역내산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증명, 검증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TPP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및 공정에 대해 원산지 누적이 적용되며 역내산 상품으로 인정

되어 TPP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역내 산업의 분업화와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제 5장)는 상품의 통관절차와 관세 등 통관 관련 규범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무역구제(제 6장)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투명한 이용절차를 담고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제 7장)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동시에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검역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제 8장)에서는 각 회원국의 기술 규정과 표준이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분야는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무역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제 17장)에서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영기업 혹은 지정독점이 보조금을 받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으로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새로 추가된 5개의 규범관련 장은 다자간 협정의 특성상 추가된 내용으로, TPP 회원국 및 전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 및 역량강화(제21장)는 다양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이 TPP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TPP 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제 22장)는 각 회원국과 아태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커니즘을 담고 있다. 개발(제 23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여성의 경제 개발 참여, 교육 및 과학기술 등 경제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 24장)은 회원국이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지원을 강화하고 서류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수출과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TPP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통합(제 25장)은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회원국 국내에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섬유 및 의류(제 4장), 투자(제 9장), 국경 간 서비스공급(제 10장), 금융서비스(제 11장), 기업인의 일시입국(제 12장), 통신(제 13장), 전자상거래(제 14장), 정부조달(제 15장), 경쟁(제 16장), 지식재산권(제 18장), 노동(제 19장), 환경(제 20장), 투명성 및 반부패(제 26장), 행정 및 제도규정(제 27장), 분쟁해결(제 28장), 예외조항(제 29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규정(제 30장)에는 TPP 발효, 개정, 가입, 탈퇴 등에 대한 절차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규 국가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작업반을 설치하여 가입조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TPP의 발효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에 발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서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는 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 회원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발효되도록 하고 있다.¹⁾

표 1 TPP 협정문의 구성

장	내용	장	내용
전문		제 18장	지적재산권
제 1장	설립 조항 및 일반 정의	제 19장	노동
제 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20장	환경
제 3장	원산지 규정 및 절차	제 21장	협력 및 역량강화
제 4장	섬유 및 의류	제 22장	경쟁력 및 비즈니스원활화
제 5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23장	개발
제 6장	무역구제	제 24장	중소기업
제 7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제 25장	규제통합
제 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 26장	투명성 및 반부패
제 9장	투자	제 27장	행정 및 제도규정
제 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28장	분쟁해결
제 11장	금융서비스	제 29장	예외조항
제 12장	비즈니스 목적의 일시적 입국	제 30장	최종규정
제 13장	전기통신	부속서 I & II	비합치조치
제 14장	전자상거래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제 15장	정부조달	부속서 IV	국영기업
제 16장	경쟁정책	관련기구	
제 17장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미국-일본 양자 간 협상 결과	※ 미국: 일본 자동차 무역 비관세 조치 ※ 일본: 비관세조치 병렬 협상

자료: 이상현 외(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1) 산업통상자원부(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보도참고자료. 2015.11.06.

3. 농업분야 타결내용

TPP 협정문 내 농업분야의 내용을 보면, 규범은 기존 WTO 규범 대비 높은 수준으로, 시장접근 분야는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규범분야는 TPP 협정 내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시장접근 분야는 개별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 수준과 감축 일정에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농업관련 규범분야와 TPP 회원국 중 미국과 일본의 시장접근분야 타결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규범분야 타결내용

TPP 협정문 내 농업관련 규범내용은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TRQ 관리방식,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협정문 제 2장 21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보조금은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작용되는 조치를 새롭게 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제도에 대한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신용(Export Credits),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 또는 수출보험(Insurance Programmes)에 대해 다자간 협상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수출경쟁에 관한 내용인 만큼, 투명성 및 상환기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규율을 개발해 나가는데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 2장 22조).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범도 WTO와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승인에 대한 무역 왜곡제한요소 제거, WTO 회원국 중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영향력 있는 국영무역기업에 직간접적인 특혜 금융제도 철폐,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 관련 투명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제 2장 23조).

협정문 제 2장 28조부터 32조까지 TRQ 관리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범위 및 일반조항, 관리 및 자격요건, 할당, 회수 및 재할당에 대한 규정과 마지막으로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TRQ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해야하며, TRQ를 운영하는 회원국은 TRQ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소 90일 전까지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TPP 협정문의 부속서 2-D에 규정되어있는 내용 이외의 새로운 조건이나 자격요건을 수입품에

부과할 수 없으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시행 45일 전에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로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해당사국과의 합의를 얻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하며, TRQ 운영 담당기관, 각 국의 TRQ 물량, 수입권자 정보, 이행을 등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TPP 규범분야에서는 회원국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3.2. 주요국의 시장접근분야 타결내용

TPP 협상은 12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별국가들의 상품양허협상이 진행되어야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각 회원국별로 자국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유형을 더 세분화하였으며, <표 2>의 각국의 즉시철폐 이외 세번 비중을 통해 민감성을 보이고 있는 부류의 품목을 알 수 있다. TPP 12개 회원국 중 농산물 세번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다른 회원국보다 복잡한 관세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중 미국은 개별 회원국마다 양허수준을 다르게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민감성을 확보하였고 일본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TRQ와 특정국가에 제공되는 TRQ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타결하였다.

표 2 TPP 회원국의 즉시철폐 이외 세번 비중

단위: %

HS2	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총세번수	700	1103	1328	1067	1593	1166	1093	974	919	1112	1707	1143
01류	산동물	3.1	3.4	2.4	2.5	3.3	3.8	5	2.3	3.5	3.3	1.6	3.3
02류	육류	8.3	6.3	7.9	7.2	7.1	5.5	7.2	6.5	7.3	6.2	5.8	6.1
04류	낙농품	4.1	4.3	6.6	5.5	4.5	5.1	4.7	3.5	5.1	4.3	14.7	4.8
05류	기타동물성생산물	2.3	2.8	1.2	2.2	2.1	1.4	2.7	1.5	2.6	2.8	1.2	2.7
06류	산수목·꽃	2.3	2.4	2	2.8	1.3	1.7	6.4	2	2.6	2.3	1.8	2.3
07류	채소	8.9	8.4	10.8	8.2	7.2	6.9	8.1	7.1	8.9	8.4	9.8	8.2
08류	과실·견과류	7.9	6.6	6.8	10.3	5.9	7.8	6.8	6.3	8.9	6.6	7	6.4
09류	커피·향신료	4.4	4.4	3.5	3.1	4.5	3.2	3.3	4.8	4.1	4.4	2.8	4.3
10류	곡물	2.3	2.3	1.6	1.9	1.9	1.8	2.4	1.6	3.9	2.2	1.2	2.3
11류	밀가루·전분	4	3.7	4.5	2.7	3.6	3	3.4	3.5	3.5	3.4	2.2	3.4

2) 이상현 외(2015), USTR(ustr.gov/tpp/).

(계속)

HS2	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총세번수	700	1103	1328	1067	1593	1166	1093	974	919	1112	1707	1143
12류	채유용종자·인삼	5.4	5.5	3.5	7.2	4.5	4.5	8.2	4	7	5.5	3.2	5.5
13류	식물성엑스	1.6	1.7	0.8	1.1	1.3	0.9	3.4	1	2	1.7	0.8	1.7
14류	기타식물성생산물	0.7	0.8	0.4	0.7	1	0.7	0.8	0.5	0.9	0.6	0.6	0.6
15류	동·식물성유지	6.6	13.6	4.8	5.6	5.4	14.2	6.3	6	7	13.5	3.9	13.2
16류	육·어류조제품	3.7	5.3	5.9	9.4	6.2	6.6	4	7.2	4.4	5.3	5.2	5.2
17류	당류·설탕과자	2.4	2.5	3	2.7	3	2.7	2.6	2	3	2.5	3.9	3
18류	코코아	1.6	2.1	1.3	1.9	1.7	1.1	1.1	1.1	2	1.4	4.6	1.4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9	3.8	11.3	2.7	7	4.5	2.7	2.9	2.6	4	4.1	4.5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8.6	6.3	6.8	8.8	15.9	14.2	7.8	13.2	7.9	6.6	10.8	6.4
21류	기타조제식료품	2.6	3.8	3.4	2.7	5.7	2.9	3.5	5.3	4	4	5.2	4.1
22류	음료·주류·식초	11.3	5.1	7.3	5.2	3.5	3.5	4.7	12.6	4	5.3	4.3	5.2
23류	조제사료	3.3	2.8	3.1	4.1	2.6	2.5	3.6	2.8	3.5	3	2.1	2.9
24류	연초	1.9	2	1.2	1.3	0.7	1.6	1.3	2.4	1.3	2.6	3.3	2.5

자료: 이상현 외(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을 재가공함.

3.2.1. 미국

미국의 농산물 관세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이며, TPP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707개의 세번을 갖고 있다. 이 중 기존에 관세가 0%인 세번은 33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19.3%에 해당된다. TPP 협상에서도 미국은 대부분의 회원국과 달리 개별국과 복잡한 형태로 양허안을 체결하였다. TPP 발효 시, 미국의 전체 농산물 중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42.8%에 해당되는 730개 세번이며, 나머지 977개 세번은 회원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다른 양허안을 채택하였다<표 3 참조>. 특히, 낙농품, 채소·과실의 조제품, 채소, 기타 조제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보이며, 회원국들의 철폐 기간에 대해 차등을 두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낙농품과 설탕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들에게 TRQ를 제공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미국의 양허안 중 낙농품은 251개의 세번 중 즉시 철폐 세번은 13개에 불과하고, 24류 품목 중 가장 많은 238개의 세번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어 자국의 산업에 민감한 품목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낙농품에 대한 자국의 민감도를 반영하여 TPP회원국 중 낙농품 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페루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 철폐 일정과 TRQ를 부여하였다. 미국의 호주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251개의 낙농품 세번

중 23개 세번(9.2%)은 미·호주 FTA 양허안을 따르고, 77개의 세번에 대해 TRQ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TRQ가 부여된 품목에는 크림과 아이스크림, 농축우유, 버터, 분유, 기타 낙농품, 치즈(미국타입, 체다, 스위스 타입, 유럽타입) 등이 있다.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77개의 세번에 대해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품목으로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요구르트(건조), 사워크림, 유장, 우유가공품, 농축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우유음료, 버터 등이 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된 철폐 기간을 설정하였다. 일본은 전체 낙농품 세번 중 13개 세번(0.1%)만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고, 22개 세번은 5년 철폐, 141개 세번은 10년 철폐, 42개 세번은 15년 철폐, 33개 세번은 20년 철폐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TRQ를 부여한 품목은 없다. 이 중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은 분유, 농축크림, 유장, 치즈 등(15년 철폐)과 농축우유, 사워크림, 치즈(미국타입, 스위스타입, 유럽타입 등), 아이스크림, 버터 대용품 등(20년 철폐)이다.

미국의 뉴질랜드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주요 낙농품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철폐하지 않는 품목은 5개에 불과하며, 77개의 품목에 대해서 TRQ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허안을 체결하였다. 뉴질랜드에게 제공된 TRQ 품목은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농축우유, 크림, 버터와 버터대용품, 유기농버터, 기타 낙농품 등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페루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낙농품 중 16개 세번에 대해 미·페루 FTA 양허안을 준수하기로 하였고, 62개 세번에 대해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국가마다 다른 방식의 양허안을 설정함으로써 미국은 국내 낙농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늦추고, 그 기간 동안 국내 낙농품 업계의 발전방향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낙농품뿐만 아니라, 채소·과실의 조제품, 채소, 기타조제식료품, 코코아, 당류·설탕과자, 육어류 조제품, 육류, 과실·견과류 등도 즉시 철폐되지 않는 많은 세번 설정을 통해 미국의 민감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TPP 협정문 내 미국의 농산물 양허결과

품목		MFN 평균 관세율 (%)	양허안		세번 합계	세번 비중 (%)
			즉시철폐 세번 수	즉시철폐 외 세번 수		
01류	산동물	1.1	26	1	27	1.6
02류	육류	6.1	56	43	99	5.8
04류	낙농품	12.4	13	238	251	14.7
05류	기타동물성생산물	0.6	20	1	21	1.2
06류	산수목·꽃	3.2	21	9	30	1.8
07류	채소	9.0	83	84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78	41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6	2	48	2.8
10류	곡물	2.2	15	6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29	9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0	5	55	3.2
13류	식물성엑스	0.8	12	1	13	0.8
14류	기타식물성생산물	1.3	11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34	33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43	46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8	58	66	3.9
18류	코코아	5.8	11	67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15	5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61	123	184	10.8
21류	기타조제식료품	7.8	12	77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39	34	73	4.3
23류	조제사료	1.8	27	8	35	2.1
24류	연초	90.7	20	36	56	3.3
합계 (비중)		9.1	730	977	1,707	100
			(42.8)	(57.2)		

자료: 이상현 외(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3.2.2. 일본

일본은 TPP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농산물 세번이 많은 국가로, 1,593개의 세번을 갖고 있다. 일본의 관세구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TPP 농업협상에서도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양허하였다. 미국은 국가

별로 다른 관세 감축 일정의 양허안을 체결한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13개 유형으로 양허하였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하지만 13개의 양허 유형을 더욱 세분화해 살펴보면 총 62개의 양허방식을 채택하였고, 50개 세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르게 양허하였다. 일본의 즉시철폐 세번은 총 784개 세번으로 전체 세번의 49.2%를 차지하고 있고, 4년 철폐부터 10년 철폐까지의 세번은 총 301개로, 전체 세번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11년 철폐부터 21년 철폐까지 세번은 총 243개로, 전체 세번의 15.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일본의 양허안은 계절관세(0.1%)와 부분감축 세번(6.2%), TRQ(7.2%), 국가별로 다른 양허안(3.1%)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양허안에서 주목할 만한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감축하는 세번으로, 총 99개의 세번이 있다. 부분 감축 세번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요구르트(기타), 유장(기타,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에 사용되는 것), 아이스크림 등이 해당되며, 일본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품목들임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다른 양허안을 채택한 세번은 총 50개로, 낙농품, 곡물, 밀가루·전분, 당류·설탕과자, 곡물·곡분의 조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등이며, 해당 세번들은 모두 일본의 주요 민감 품목이다. 일본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에 대해서만 품목별로 추가적인 관세혜택이나 TRQ를 제공하고, 다른 TPP 회원국에 대해 민감 품목의 개방을 막음으로써, 자국의 민감 품목을 최대한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TRQ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TRQ와 특정 회원국에 적용되는 TRQ가 있다. 모든 회원국에 제공되는 TRQ는 총 33개 품목으로, 밀, 면류(우동, 소바), 베이커리조제식품, 빵가루, 보리, 천연치즈(체더치즈원료), 버터, 탈지분유, 식용기름(지방과 식용유), 커피, 초콜릿, 설탕 등이다. 특정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TRQ는 총 25개 항목으로, 쌀,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밀, 맥아, 가공치즈, 유장, 포도당과 과당, 옥수수과 감자전분 등이며, 품목에 따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에만 적용된다.

부분감축과 국가별로 다른 감축 일정, TRQ를 통해 일본의 쌀,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낙농품, 가당 조제품(설탕) 등 5대 민감 품목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쌀은 미국과 호주에 대해서만 TRQ를 설정하였다. 미국은 TPP 발효와 동시에 5만 톤의 TRQ를 부여받고, 13년차에는 최대 7만 톤까지 증량하기로 하였고, 호주는 발효 즉시 6,000톤에서 13년차에 8,400톤까지 증량하기로 하였다. 밀과

보리에 대해서는 현행 국영무역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25만 3,000톤과 6만 5,000톤의 TRQ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쇠고기는 발효와 동시에 현행관세 38.5%를 27.5%로 감축하고, 16년에 걸쳐 9%까지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돼지고기는 품질에 따라 다른 관세를 적용하며 수입가격과 국내 기준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징수하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낙농품은 품목별로 다른 관세방식을 설정하였으며, 숙성치즈는 16년에 걸쳐 철폐, 블루치즈는 11년차까지 현행관세의 50%를 감축하고, 가공치즈에 대해서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민감 품목인 가당 조제품에 대해 일본은 9만 6,000톤의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4 TPP 협정문 내 일본의 농산물 양허결과

품목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즉시 철폐	4	6	8	9	10	11	13	16	21	계절	부분	TRQ	국가 별		
01류	산동물	0.4	46	0	0	0	0	0	0	0	6	0	0	0	0	52	3.3	
02류	육류	10.4	48	0	3	1	0	8	16	2	5	0	0	30	0	113	7.1	
04류	낙농품	26.4	3	0	5	1	0	0	7	2	4	1	0	17	23	72	4.5	
05류	기타동물성 생산물	0.3	33	0	0	0	0	0	0	0	0	0	0	0	0	33	2.1	
06류	산수목·꽃	0.4	21	0	0	0	0	0	0	0	0	0	0	0	0	21	1.3	
07류	채소	5.9	87	1	15	0	0	0	9	0	0	0	0	2	0	114	7.2	
08류	과실·견과류	7.8	69	0	14	0	0	0	10	0	0	0	1	0	0	94	5.9	
09류	커피·향신료	3.4	65	0	7	0	0	0	0	0	0	0	0	0	0	72	4.5	
10류	곡물	2.4	19	0	1	0	0	0	0	0	0	0	0	0	1	30	1.9	
11류	밀가루·전분	19.5	4	0	16	3	0	0	6	0	0	0	0	0	19	58	3.6	
12류	채유용종자· 인삼	3.0	61	0	0	2	0	0	0	0	0	0	0	8	0	71	4.5	
13류	식물성엑스	2.9	19	0	1	1	0	0	0	0	0	0	0	0	0	21	1.3	
14류	기타식물성 생산물	3.1	15	0	1	0	0	0	0	0	0	0	0	0	0	16	1.0	
15류	동식물성유지	3.8	51	2	22	1	1	0	9	0	0	0	0	0	0	86	5.4	
16류	육·어류조제품	13.2	46	0	9	0	0	0	25	0	19	0	0	0	0	99	6.2	
17류	당류·설탕과자	16.3	9	2	2	0	0	0	11	0	0	0	0	0	15	48	3.0	
18류	코코아	57.4	5	0	3	1	0	0	4	0	0	0	0	2	12	27	1.7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3	2	0	8	4	5	0	33	0	0	0	0	22	26	112	7.0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2.6	77	1	108	18	0	0	45	0	0	0	0	2	3	254	15.9	

(계속)

품목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즉시 철폐	4	6	8	9	10	11	13	16	21	계절	부분	TRQ	국가 별			
21류	기타조제식 료품	17.7	24	1	17	1	0	0	14	0	0	1	0	16	16	1	91	5.7	
22류	음료·주류· 식초	5.3	34	2	5	5	0	0	10	0	0	0	0	0	0	0	56	3.5	
23류	조제사료	0.5	39	0	3	0	0	0	0	0	0	0	0	0	0	0	42	2.6	
24류	연초	5.1	7	0	0	0	0	0	4	0	0	0	0	0	0	0	11	0.7	
합계 (비중)		12.9	784	9	240	38	6	8	203	4	34	2	1	99	115	50	1593	100	
			(492)	(0.6)	(151)	(2.4)	(0.4)	(0.5)	(127)	(0.3)	(2.1)	(0.1)	(0.1)	(6.2)	(7.2)	(3.1)			

자료: 이상현 외(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4. 일본의 TPP 대응방안

일본정부는 TPP가 타결되기 전, 2013년 「농림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시산계산방법」을 통해 TPP 발효 이후 예측되는 19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율과 생산 감소액을 공개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물의 생산 감소액은 약 3조 엔으로 추정되며, 그 중 쌀은 일본의 농림수산물 중 가장 감소 규모가 큰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쌀 다음으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우유유제품, 설탕 등의 순으로 생산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5 참조>.³⁾ TPP 타결 후 일본정부는 TPP 협정문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일본의 TPP 정부 대책본부는 2015년 12월 24일자로 TPP 분야별 현황과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를 공개하였다.⁴⁾ 일본 정부는 TPP 발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13.6조 엔의 경제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TPP 타결로 인해 자동차 관련 기계 산업과 철광 및 금속, 화학 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반면, 농림수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TPP 타결 이후 농림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2020년을 목표로 농림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 1조 엔의 수출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의 전환) 방안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책을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3) TPP政府対策本部(2013). 「(別紙) 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4) 일본 내각관방 TPP 정부 대책 본부(<http://www.cas.go.jp/jp/tpp/kouka/index.html>).

표 5 TPP 발효 이후 일본의 주요 농산물 생산 감소 추정(TPP 타결 및 정책 반영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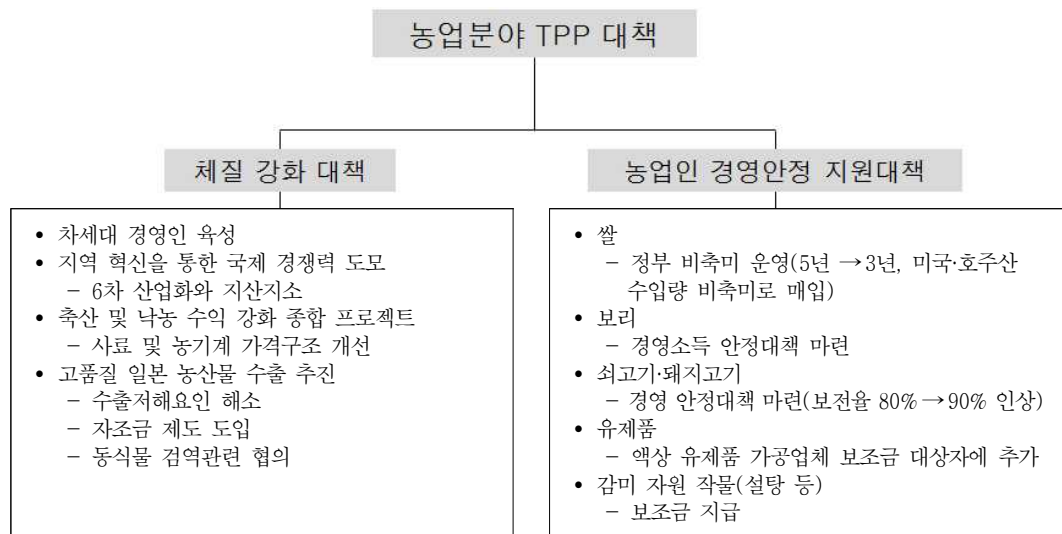
품목	생산량 감소율	생산 감소액	계산방법
쌀	32%	약 1조 100억 엔	국내 생산량의 약 30 %가 수입을 대체, 국내 생산은 남아 있지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밀	99%	약 770억 엔	국내산 밀 100을 판매 기점으로 하고, 밀가루 용 밀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보리	79%	약 230억 엔	주식용 및 된장용은 그대로, 맥주용, 소주용, 보리차용 등은 대체될 것으로 예상
녹두	23%	약 30억 엔	고급과자용, 콩자반용 등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팥	71%	약 150억 엔	고급과자용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땅콩	40%	약 120억 엔	미탈각용은 그대로, 탈각용은 대체될 것으로 예상
설탕	100%	약 1,500억 엔	모두 대체될 것으로 예상
전분 원료 작물	100%	약 220억 엔	모두 대체될 것으로 예상
곤약 감자	—	—	TPP 협상 관계국에서의 수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을 고려
차	—	—	TPP 협상 관계국에서의 수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을 고려
가공용 토마토	100%	약 270억 엔	케첩 등 토마토 가공제품은 모두 대체될 것으로 예상
감귤류	8%	약 60억 엔	스트레이트 과즙은 그대로, 농축과즙 및 통조림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사과	8%	약 40억 엔	스트레이트 과즙은 그대로, 농축 과즙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파인애플	80%	약 10억 엔	통조림 대체에 따라 생과용 감소할 것으로 예상
우유·유제품	45%	약 2,900억 엔	신선도가 증시되는 생크림 등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쇠고기	68%	약 3,600억 엔	3등급 이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돼지고기	70%	약 4,600억 엔	고급상품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닭고기	20%	약 990억 엔	가공용의 절반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
계란	17%	약 1,100억 엔	도시락용과 가공용의 절반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
농산물 계		약 2조 6,600억 엔	

자료: TPP政府対策本部(2013). 「(別紙) 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첫 번째로, TPP 발효로 수입 농림수산물의 관세 감축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림어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농림어업자의 경영 발전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명, 체질 강화 대책이라고도 일컬으며, 일본정부는 미래 농업계를 이끌 수 있는 경영 감각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논(벼), 밭(채소, 과수), 산지(임산물)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혁신적인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원 계획에는 6차 산업화와 지산지소(地産地消)⁵⁾를 통해 지역 농

업의 수익능력을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축산 및 낙농분야에서 수익 강화 종합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본 프로젝트에는 사료와 농업기계의 가격형성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쌀, 쇠고기, 과일, 차, 임산물, 수산물 등 일본의 중요 품목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 확대 방안으로 농가의 자금 50%를 투입하여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동식물 검역관련 협의를 통해 일본 농림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림 2 일본의 농업분야 TPP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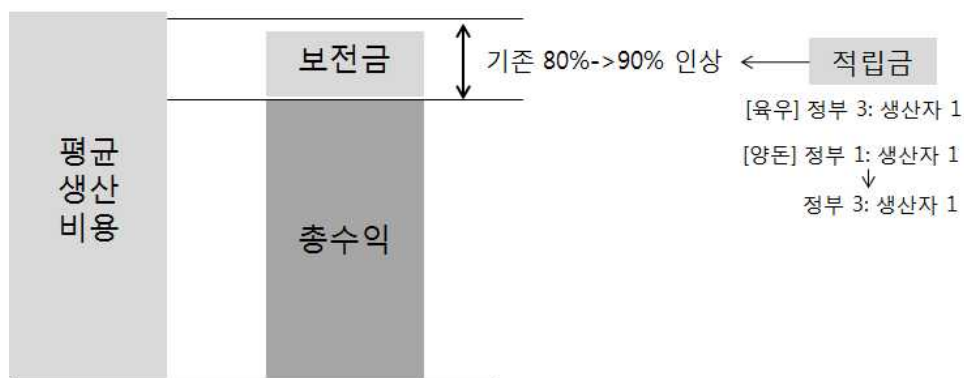


두 번째로 중요 5대 품목에 대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입 증가분보다 많은 양의 쌀을 정부의 비축미로 매입하여 운영하며, 5년 동안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미국과 호주에서 별도로 수입되는 기준 수입량에 해당하는 쌀을 정부가 비축미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보리와 관련하여, 일본산 보리의 가격 인하 우려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본산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안정화를 위해 육우 비육 경영 안정 특별 대책사업과 양돈 경영 안정 대책사업을 법제

5)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화하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경영 안정대책 사업을 통한 평균 생산비용에 대한 보전 비율을 80%에서 90%로 인상하고, 기존에 육우농가에만 적용되던 보전금에 대한 정부의 부담 수준(정부 3: 생산자 1)을 양돈농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그림 3 참조>. 또한 육우용 송아지에 대한 보증 기준가격을 현재 경영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생크림 등의 액상 유제품을 가공하는 우유 생산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감미 자원 작물(설탕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⁶⁾

그림 3 육우 및 양돈 경영 안정대책사업 중 보전비율 및 정부 부담수준



자료: 農林水産省(2016), 「農政新時代: 農林水産分野における品目別TPP対」.

일본 정부는 TPP에 대한 농림수산업 분야의 대책을 통해 2013년 TPP에 따른 농림수산 분야 영향평가에서 분석되었던 생산 감소 효과를 축소시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 타결 이후, 지원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통해 TPP가 일본의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피해액이 기존 추정치였던 3조 엔에서 최대 1,516억 엔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표 6 참조>.

6) TPP政府対策本部(2015). TPP分野別ファクトシート: 「農林水産分野」.

표 6 TPP 발효 이후 일본의 주요 농산물 생산 감소 추정(TPP 타결 및 정책 반영 후)

품목	생산 감소액	계산방법
쌀	0억 엔	현재 국영무역 수입제도와 TRQ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영 무역 이외의 수입 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 국산 밥상용 쌀의 생산량과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밀	약 6억 엔	국영 무역 체제 하에서 TPP 발효 시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밀수입은 국내산의 일부를 대체하겠지만,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소득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보리	약 4억 엔	국영 무역 체제 하에서 TPP 발효 시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보리수입은 국내산의 일부를 대체하겠지만,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소득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설탕	약 52억 엔	설탕 가치 조정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현재 수입되고 있는 태국산 원당의 일부가 TPP 회원국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반면,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소득 안정 대책 등의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전분원료 작물	약 12억 엔	설탕 가치 조정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TRQ는 현행 TRQ와 큰 차이가 없음. 국내산 전분 제조비용 절감 등의 체질 강화 대책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쇠고기	약 311- 약 625억 엔	장기 관세 감축 기간을 확보하고 셰이프 가드를 도입함. 국내산 쇠고기 중 일부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되는 점 등으로 당분간 수입의 급증이 없을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돼지고기	약 169- 약 332억 엔	장기 관세 감축 기간을 확보하고 차액 관세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셰이프 가드를 도입함. 콤비네이션 수입(고가 상품에 저가상품 끼워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수입 급증은 없을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생산과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우유·유제품	약 198- 약 291억 엔	버터 탈지 분유 등은 현재 TRQ 관세를 유지 한 후, TPP 관세 범위를 설정함. 유청은 장기 관세 철폐 기간 및 셰이프 가드를 도입했고, 숙성 치즈 등은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입 급증은 없을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팥	0억 엔	TRQ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산 팥과의 대체는 없고, TPP 회원국 외 수입이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강낭콩	0억 엔	TRQ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산 강낭콩과의 대체는 없고, TPP 회원국 외 수입이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땅콩	0억 엔	국산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경쟁국의 큰 품종이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PP 회원국 외 수입이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곤약감자	-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미미함.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차	-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미미함.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가공용 토마토	약 1억 엔	국산 토마토 주스의 소비가 최근 증가추세인 가운데, 국산 토마토 가공 업체가 계약 재배를 증가시키으로써, 국산 채취의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계속)

품목	생산 감소액	계산방법
감귤류	약 21- 약 42억 엔	국산 귤은 수입 오렌지와 가격 차이가 있는 가운데 품질 면에서 차별화되어있고, 국산 감귤 주수도 외국산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사과	약 3- 약 6억 엔	국산 사과는 품질 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산 사과 과즙도 외국산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파인애플	0억 엔	TRQ 제도가 유지됨.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닭고기	약 19- 약 36억 엔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미미하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생산과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계란	약 26- 약 53억 엔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미미하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생산과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농산물 계	약 878- 약 1,516억 엔	

주: 일본은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차액관세제도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을 상회할 경우 증가세를 부과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입가격과 기준가격 차이만큼을 관세로 징수하는 제도임. 수입업체에서는 저렴한 돼지고기를 수입할 경우 차액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싼 고기와 저렴한 고기를 섞어서 수입(콤비네이션 수입)하여 수입 평균가격이 기준가격과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자료: TPP政府対策本部(2015). 「(別紙)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計算方法について」.

5. 시사점

2015년 10월 오랜 세월 끝에 TPP가 타결되었다. TPP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TPP 협상국들의 큰 이견 차로 협상타결 여부가 불투명하게 전망되었다. 하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던 자동차 부품, 의약품 특허, 낙농품 개방 마지막 이슈들에 대하여 해당 협상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TPP가 타결되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보호주의 무역을 지지하며 TPP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회 비준을 고려하면 TPP 발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TPP 가입 희망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TPP 발효가 늦춰지는 것이 오히려 협상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P는 협상 초기에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모든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일부는 계절관세나 부분감축 형태로 양허하거나 TRQ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경우 회원국 별로 개별협상을 통해 양허 수준을 다르게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민감성을 확보하였고, 일본은 모든 국가에 적용

되는 TRQ와 특정국가에 제공되는 TRQ를 구분하고 즉시철폐부터 부분감축 유형까지 13개의 세번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관세를 개방하였으나 TPP 내 회원국 별로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TPP 가입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범분야에서는 기존에 WTO에서 논의되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결과가 있었고, 일부 규범분야에서는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앞서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범 분야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TPP 수준에 맞춰 조금씩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민감한 농업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TPP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을 완전히 방어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TPP 가입에 따른 국내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존에 보호주의 무역을 고수하던 일본은 TPP 협상을 계기로 기존의 입장을 탈피하고 농림수산업분야에서 2020년까지 1조 엔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과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율을 인상하는 지원책을 제시하였지만, 체질 강화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일원으로 미래 농업인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TPP 가입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TPP 발효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분석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5개의 FTA를 성사시킨 FTA 선진국으로서, FTA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 직불제도나 폐업지원 제도 등 FTA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입농산물과 농가 경영 환경의 악화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체질 강화 대책과 같이 농업경영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수입개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보도참고자료. 2015.11.06.
- 이상현, 정대희, 안수정(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P2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 11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TPP政府対策本部(2013). 「(別紙)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 TPP政府対策本部(2015). 「(別紙)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 TPP政府対策本部(2015). TPP分野別ファクトシート: 「農林水産分野」
- TPP政府対策本部(2015). 「総合的な T P P 関連政策大綱.」
- 農林水産省(2016). 「農政新時代: 農林水産分野における品目別 T P P 対」

참고사이트

-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Participating Countries
(<http://www.inboundlogistics.com/cms/article/global-logistics-december-2015/>)
- USTR (ustr.gov/tpp/)
- 日本 内閣官房 TPP 政府対策本部 (<http://www.cas.go.jp/jp/tpp/kouka/index.html>)